

# 선수위원회 규정

## 목 차

제1조(목적) .....	1
제2조(설치 및 기능) .....	1
제3조(구성) .....	1
제4조(위원의 임기) .....	1
제5조(위원의 해촉) .....	1
제6조(위원장 및 위원직의 직무) .....	1
제7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) .....	2
제8조(위원의 제척 및 기피) .....	2
제9조(수당 등) .....	2
제10조(비밀준수의무) .....	2
제11조(언론 대응) .....	2
제12조(적용 규정) .....	2
부칙 .....	2

# 선수위원회 규정

제 정 2018. 8. 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(이하 “도핑방지위원회”라 한다)가 도핑방지와 관련된 선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도핑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수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및 기능)** ① 도핑방지위원회 정관 제37조에 따라 선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도핑방지활동 관련 선수의 입장 대변 및 지지에 관한 사항
2.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피드백에 관한 사항
3. 도핑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4. 도핑방지위원회 및 도핑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대사 및 대변인에 관한 사항
5. Play True 스포츠 및 도핑방지위원회의 현장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1. 선수(현역/은퇴) 또는 코치/선수지원요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
2. 도핑 없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
3. 도핑없는 스포츠(일반/장애, 하계/동계, 프로 등)에 기여한 사람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세계도핑방지규약(World Anti-Doping Code)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의 해촉)**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질병, 심신쇠약, 해외체류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법령위반,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6조(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**제7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은 1년에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의결권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의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의 제척 및 기피)**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9조(수당 등)** 위원회 위원에게는 보수·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,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비밀준수의무)** ①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언론 대응)** 위원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언론 관련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핑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적용 규정)**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<2018. 8. 1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도핑방지위원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